## 해외진단

# 붕괴 직전의 일본의 형식적인 자율심의 제도 : 형식적 자율심의 제도의 외해와 정부 개입의 노골화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 목차

- 1 일본 방송심의 법적 근거
- 2 일본 방송심의 자율기구 BPO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3 일본 방송심의의 문제점과 한계
- 4 결론

#### 요약

일본 방송심의는 자율규제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형식적인 자율심의와 병행하여 일본 정부가 방송 내용에 대해 직접 행정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정 제재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내용 심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 정부의 방송 내용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순한 주의 환기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재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송의 자율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방송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스스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방송의 과도한 상업성이 일본 정부의 방송 내용 개입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는 일본 사회에 팽배한 정치보수화의 산물이다.

## 1. 일본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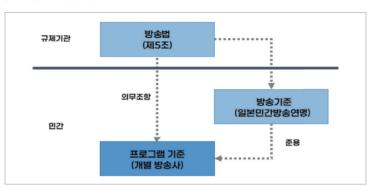
일본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이다. 일본 방송법에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다. 일본 방송법 제3조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또는 규제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는 "방송사업자는 국내방송 및 해외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편집에 있어, 다음각 호에 정해진 바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을 것, 2.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3.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 4.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논점을 명확하게 할 것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조는 일본의 모든 방송사가 방송에서 준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며 방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방송법 제3조는 방송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제4조의 내용은 방송 내용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프로그램 편집 준칙으로 불리는 일본 방송법 제4조에 대해 합헌과 위헌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학계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제4조의 프로그램 편집준칙에 의거해방송법 제5조는 일본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제정한 방송 기준을 차용하여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한다. 방송법 제5조의 '프로그램 기준' 마련이라는 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방송사가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을 가져다가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은 방송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방송 내용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제정하는 방송기준은 2023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은 현행과 같은 형태로 전면 개정된 1970년에는 14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지만, 2023년에는 151개 조항으로 수정되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은 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심의회 전문회의부문 산하의 '고사사례연구부문회'에서 내용 개정을 담당한다. 해당 연구부문회의 위원들은 방송사의 '고사(考査) '당당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방송기

<sup>1)</sup> 일본 방송사의 고새考査)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내용 및 표현이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준과 사내 내규,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준과 관련된 의견이나 개정사항 등은 소속 민간방송연맹 회원 방송사들에게 의견 조회 후, 민간방송연맹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되다.



[그림 1] 일본 방송 내용 심의 규제 개요

## 2. 일본 방송심의 자율기구 BPO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1) BPO의 구성 및 운영

일본에서 방송 내용 심의를 실시하는 자율심의로는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 (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 이하 'BPO')가 있다. BPO는 2003년 7월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방송 내용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BPO는 1969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이후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및 방송프로그램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1997년 설립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BRP)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NHK, 민간방송연맹, 민간방송연맹 가입방송사, BPO 이사회가 승인한 일반 방송사업자로 구성되며, 2024년 3월 기준으로 BPO소속 회원사는 207개이다. 소속 회원사들이 연간 약 4억 엔 정도 납부한 회비로 운영된다. BPO 이사장은 외부 학계 전문가가 맡지만, 이사회의 이사 9명은 NHK 3인, 민간방송연맹 3명, 방송사업자 3인으로 구성된다. BPO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사업계획,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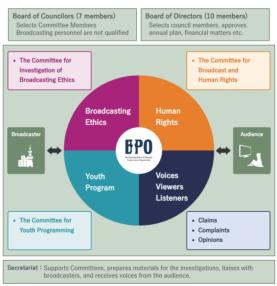
예산, 결산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 며 연임도 가능하다.

방송국의 동향 및 시청자로부터의 의견 취합과 BPO 산하의 제3자 위원회 운영 등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BPO의 조직은 이사회 10명(이사장 1인, 비상근 이사 9인)과 평의 원회는 7명 이내(방송국 임직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며, 산하 3개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PO 산하에는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다. 평의회 위원과 제3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 [그림 2] BPO 조직구성

► Organization



출처 : BPO 홈페이지(https://www.bpo.gr.jp/)

#### 2) BPO 제3자 위원회 운영 현황

BPO 제3자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월 1회 개최된다. 하지만 BPO 산하에 설치된 제3자 위원회는 내용 심의 대상과 결정 사항,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거나 관련 보도가 있는 프로그램의 취재·제작 방식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에는 "의견", 심리 안건의 경우에는 "권고"와 "견해"를 공표한다. 이 중 "견해"보다는 "권고"가 제재 수위가 높다. 위원회에서 심의 및 심리<sup>2</sup>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는 방송국 보고, 시청자 의견, 관계자 정보 취합,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통해 수집한다.

BPO 제3자 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제3자 위원회의 안건 선정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사무국은 방송된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방송국으로부터 입수하여 사무국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방송국의 보고 내용에 기초해 심의 및 심리사안이 되는지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 또는 심리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안건으로 결정된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은 해당 제3자 위원회의 담당 위원들이 관계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관계자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방송윤리 위반과 허위, 날조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 "권고", "견해"를 방송국에게 통보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제3자 위원회가 "권고", "견해"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요구하면, 해당 방송국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또한 방송국은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한후 3개월 이내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제3자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표할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3자 위원회로,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묘사 등이 부적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심의하고 의견을 공표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TV와 라디오프로그램에 대한 리포트를 매월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내용은 방송사

<sup>2)</sup>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방송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프로그램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한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의 일부에 허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심리' 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한다.

업자에게도 제공되어 제작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위원회의 학생 모니터는 매월 1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며, 모니터 요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사례비로 매월 1,000엔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위원회는 방송 제작자와의 의견 교환,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공개 심포지엄 등을 실시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방송국의 제작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서면질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논의하여 "위원회의 의견"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청소년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견해"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한다. 월 1회 개최되는 청소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청 자 의견을 담당 위원이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토의 안건으로 결정한다. 토의 안건으로 선정된 문제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시청하고, 필요 시 해당 방송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토의 후, 청소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문제없음', '위원장 코멘트', '심의'의 3가지 결론을 내린다. 단, '심의'안건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결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국의 제작책임자 의견과 기획의도에 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 담화', '위원회의 생각', '견해' 3가지 형태로 공표되며, '견해'의 형태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회의록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위원회의 생각'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견해'의 결정내용은 기자회견의 형태로 공개한다. 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생각' 결정을 받으면 방송사업자는 청소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견해' 결정이 내려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심의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책 등을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 3) BPO 제3자 위원회 심의의 문제점과 과제

BPO의 결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BPO의 내용 심의는 산하에 설치된 3개의 제3자 위원회가 각기 전문 영역에 대해 독립성을 갖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이다. 제3자 위원회 중 방송윤리검증위원회와 방

송인권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의결하며, 의결 내용에 따라 방송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보고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방송윤리검증위원회와 방송인권위원회의 심의가 중복되고, 결정 내용이 상충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방송윤리인 반면, 방송인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인권침해로, 심의 대상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시청자 의견과 뉴스 보도, 위원회의 문제제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방송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반면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은 개인 또는 직접 이해 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에 착수한다.

BPO 산하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와 방송인권위원회가 동시에 심의했던 사안들의 결정 사항을 보면, 각기 다른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지만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NHK 클로즈업 현대 '추적 출가 사기-노림의 대상이 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 방송윤리검증위원회가 심각한 방송윤리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 결정을 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방송윤리 위반에 해당된다는 '권고' 결정을 중복적으로 내린 바 있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본 총무성의 총무대신도 별도로 '엄중주의'를 내린 점까지 감안하면, 동시에 3개의 심의 제재가 내려진 셈이다.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BPO 산하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와 방송인권위원회 그리고 일본 총무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심의를 하며, 비슷한 제재를 중복해서 내렸다는 점에서 형식은 달라도 실제로는 BPO 산하의 두 제3자 위원회와 총무성의 행정 제재 기능이 중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일본 방송심의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가들이 방송규제를 제3의 독립 위원회에 맡기는 반면, 일본은 방송 행정과 규제를 독임제 행정 부처가 담당한다. 방송규제의 주무부처인 독임제 행정부처 총무성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내용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는 편향성을 의식하여 내용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왔다. 일본 총무성의 전신인 우정성 시절부터 헌법에 따라 방송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결과 일본은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방송 내용 심의를 맡겨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 편집 준칙을 엄수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방송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76조에 의거하여 방송 중지나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송법 제4조의 프로그램 준칙을 윤리규정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범으로 적용하겠다는 인식의 변화이며, 방송 내용심의를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다.

과거 일본 방송사들이 방송 내용으로 인한 문제로 총무성(구 우정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처분과 더불어 방송사 차원에서도 원인 규명, 재발방지책 강구, 윤리 향상 제도의 신설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방송사 내부의 개선 방안 수립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방송법에 기초한 행정권을 지닌 정부 부처의 강제적인 요구 사항이다.

방송심의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첫째, 방송 내용 규제를 위한 제3자 기관으로서 BPO는 조직 운영의 주체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PO에서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학계와 방송계 종사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점점 보수화·우경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일본 정치 지형으로 인해 언론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기조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방송사의 자율심의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정치와 이념적 갈등의 심화가 방송 내용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일본 방송 내용심의는 형식적 자율심의의 형태 에서 정부가 방송 내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형 식적으로는 BPO를 통해 자율심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BPO의 결정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 내용에 대해 별도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일본 정부는 방송 법 위반 시 행정제재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다. 행정지도는 경 고, 문서에 의한 엄중 주의, 구도에 의한 엄중 주의, 문서에 의한 주의, 구도에 의한 주의라는 5단계가 존재한다.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주체도 총무대신, 방송행정담당의 정책 총괄관 및 국장, 통신국장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행정지도의 등급과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주 체의 조합에 의해 햇젓지도의 등급이 정해진다. 햇정처부은 전파법 제76조3에 따라 방송국 의 방송 중지와 면허 정지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방송 내용에 대해 내리는 행 정제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거나 BPO 의 심의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얼마든지 일본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제재 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 내용을 다른 방송사가 행정제재 대상이 되었 을 때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 가 방송된 내용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나중에 방송사의 존폐와 직결된 재허가 과 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방송사들에게는 행정제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결과적 으로 보도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행정제재의 과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 사회 분위기에서 정부의 결정에 맞서 방송사업자가 소송을 건 다는 것은 정부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방 송 내용에 대해 행정제재를 직접 내리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sup>3)</sup> 일본 전파법 제76조는 "총무대신은 면허인 등이 이 법률, 방송법 혹은 이러한 법률에 의거한 명령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국의 운용 정지를 명령하거나 기간을 정해 운용 허용 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 제76조 제4항에는 면허의 취소가 기능하다는 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 4. 결론

일본 방송의 내용심의와 관련된 가장 주목할 변화는 2010년 이후 공궈력에 의하 방 송 개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방송 내용 개입은 행정제재를 통 한 제도적 차워 개입도 있지만, 집권 여당인 일본 자민당을 통해 우회적인 방송 내용 개입 도 빈번하다. 2014년 11월 중의원 해산 전날, 일본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NHK와 일본 주요 민간방송사 5개 사의 기자들을 자민당 당사로 불러 "선거 시 보도의 공평 중립과 공정의 확 보에 관한 요청"이라는 무서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4월에는 NHK '클로즈업 현 대'의 내용 조작 의혹과 TV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 해설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 방송 사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어지 는 일본의 정치 구조에서 정치와 언론의 공생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독식 의 정치 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화되고, 정치적 보수화까지 심화되면서 방송사를 정치적 도 구로 간주하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특히 방송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방송사는 행정부처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내각제인 일본은 통상 적으로 행정부처의 장관(대신)을 전문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 맡는다는 점에서, 정치권 의 영향력이 방송에 직접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용 심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제재를 내린다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방송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형식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심의가 일본의 방송심의 제도임에 는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2010년 이후 일본 정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행 정제재를 내리고, 이러한 행정제재를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까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자의 독립적 자율심의 기구가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의 방송 담당부처인 총무성은 따로 행정제재나 엄중주의를 내린다. 방송 사의 입장에서는 구속력 없는 자율심의 기구인 BPO의 심의 결정보다는 방송면허의 재허가 권을 지닌 총무성의 행정제재나 엄중주의 조치를 당연히 훨씬 비중 있게 받아들인다. 일본 방송사들은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율심의 기구인 BPO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만, 정치권력의 방송 내용 개입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 방송사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BPO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자율심의를 지켜낼 것인가 하 는 난제와 마주하고 있다.

#### 참고문헌

放送倫理・番組向上機構(2023). BPOの20年 これまでとこれから. 방舎記1・프로그램 향상기구(2023). BPO의 20년 지금까지와 앞으로.

村上聖-(2008). 放送法 番組準則。の形成過程. 放送研究と調査. April 2008. 무라카미 세이이치(2008). 방송법 '프로그램 준칙'의 형성 과정. 방송 연구와 조사. April 2008.

中島誉貴(2017), 「番組編集準則に基づく放送の自由」についての考察、早稲田社会科学総合研究 別册「2017 年度 学生論文集」 나카지마 미츠키(2017), 「프로그램 편집 준칙에 근거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 와세다 사회 과학 종합 연구 별책 「2017년도 학생논문집」

佐藤潤司(2018). BPOと放送の自由.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93. 사토 준지(2018). BPO와 방송의 자유.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No.93.

塩田幸司(2019), 放送の自由自律とBPOの役割, NHK 放送文化研究所年報 2019. 시오다 유키지(2019), 방송의 자유, 자율 및 BPO의 역할, NHK 방송 문화 연구소 연보 2019.

清水直樹2024), 放送の「政治的公平」とBPOの役割。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286, 시미즈 나오키(2024), 방송의 「정치적 공평」과 BPO의 역할, 조사와 정보―ISSUE BRIEF―, No.1286,

BPO홈페이지(https://www.bpo.gr.jp/)